

의안번호	제 330 호
의결년월일	1996. 2. 10. (제 41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6. 1. 19.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0
------	-----

제출연월일 : 1996. 1. 19.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양질의 대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과를 폐지하고 과의 명칭은 기능과 일치되도록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 사회진흥과를 폐지함
-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함

3. 본 문

-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경제통상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분장사무중 "제10호 및 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공영개발 종합개발 수립 추진
- 11. 군수공약사업 추진

제4조(문화공보실) 분장사무중 '제2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13호'를 '제2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제13호 내지 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체육업무 지원 및 체육단체 지도육성
14. 체육시설 건립, 체육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5. 그 밖에 문화·공보·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과) 분장사무중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5조 내지 제20호'를 '제14호 내지 제19호'로 하며, '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0호 내지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행정 전산화 추진 총괄
21. 행정통신업무
22.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재무과) 분장사무중 제9호 "공유재산"를 "국·공유재산 관리"로 하며,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제9조(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제18호'를 '제21호'로 하며, '제18호 내지 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마을문고·금고 운영
19. 사회봉사단체 지도 관리
20.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제10조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한다.

제13조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하며 분장사무중 제1호 "교통행정"을 "통상교통행정"으로 하고,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제16호 내지 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산물 유통개선
17. 지역특산물 생산장려 판매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
18.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통상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16조(건설과) 분장사무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타실과 소관 시행 건설사업 시행지도. 감독

제17조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하고 분장사무중 '제17호 도시개발행정'을 '지역개발행정'으로 하여 '21호'로 하며, '제17호 내지 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중요도로변 정화 및 공원화사업

18. 건강한 국토사업

19. 농로개설 및 도서개발

20. 광고물 등 허가·신고·단속 및 지도감독

제18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분장사무중 제9호 '기타 민방위 병사에 관한 사항'을 '재난(인위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집행'으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 본부구성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u>사회진흥과</u> , 재무과, 지적과, <u>사회복지과</u> , <u>환경보호과</u> , 산업과, 축산과, <u>지역경제과</u> , <u>산림과</u> , 수산과, 건설과, <u>도시과</u> <u>민방위과</u> 를 둔다.	제2조(실과의 설치) ----- -----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u>환경과</u> , <u>산업과</u> , <u>축산과</u> , <u>경제통상과</u> , <u>산림과</u> , <u>수산과</u> , <u>건설과</u> , <u>지역개발과</u> , <u>민방위재난관리과</u> 를 둔다.
제3조(기획실)·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기획실)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행정전산화 추진총괄</u>	10. <u>공영개발 종합계획 수립</u>
11. <u>행정통신업무</u>	11. <u>군수공약사업 추진</u>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문화공보실)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여론조사 및 정보수집분석(삭제)</u>	2. <u>삭제</u>
3 ~ 13. (생략)	2 ~ 12. (3 ~ 13호와 같음)
14. <u>그밖에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삭제)</u> (신설) (신설) (신설)	13. <u>체육업무지원 및 체육단체 지도육성</u> 14. <u>체육시설건립, 체육공원조성및 유지관리</u> 15. <u>그 밖에 문화공보,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u>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내무과) (현행과 같음)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바르게살기운동</u>	14. <u>삭제</u>
15 ~ 20 (생략)	14 ~ 19 (15 ~ 20와 같음)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1. <u>그 밖에 다른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p> <p>제6조(사회진흥과) - (생략)</p> <p>제7조(재무과)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u>공유재산관리</u></p> <p>10. <u>부동산 평가업무(삭제)</u></p> <p>11. <u>(생략)</u></p> <p>제9조(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7(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8. <u>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u></p> <p>제10조(<u>환경보호과</u>)<u>환경보호과</u>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0(생략)</p>	<p>20. <u>행정전산화 추진 총괄</u></p> <p>21. <u>행정통신업무</u></p> <p>22. <u>여론조사 및 정보수집</u></p> <p>23. <u>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p> <p>제6조 (삭제)</p> <p>제7조(재무과)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국·공유재산 관리</u></p> <p>10. <u>삭제</u></p> <p>10. <u>(11호와 같음)</u></p> <p>제9조(사회복지과) (현행과 같음)</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u>새마을지도자 육성및 마을문고금고운영</u></p> <p>19. <u>사회봉사단체 지도관리</u></p> <p>20. <u>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u></p> <p>21. <u>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u></p> <p>제10조(<u>환경과</u>)<u>환경과</u>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역경제 및 상공, <u>교통행정</u>에 관한 종합기획·조정.</p> <p>2 ~ 1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6. <u>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 통상행정</u>에 관한 사항</p>	<p>제13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역경제 및 상공, <u>통상교통행정</u>에 관한 종합기획·조정</p> <p>2 ~ 15 (현행과 같음)</p> <p>16. <u>농산물 유통개선</u></p> <p>17. <u>지역특산물 생산장려 판매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u></p> <p>18. <u>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통상행정</u>에 관한사항</p>
<p>제16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2. <u>그 밖에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u></p>	<p>제16조(건설과) (현행과 같음)</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타실과 소관 시행건설사업 시행지도·감독</u></p> <p>15. <u>그 밖에 건설업무에 관한사항</u></p>
<p>제17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7조(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u>중요도로변 정화 및 공원화 사업</u></p> <p>18. <u>건강한 국토사업</u></p> <p>19. <u>농로개설 및 도서개발</u></p> <p>20. <u>광고물등 허가, 신고 단속 및 지도감독</u></p>

현행	개정안
<p>17. <u>그 밖에 도시개발행정에 관한 사항</u></p> <p>제18조 (민방위과) <u>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u>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기타, 민방위, 병사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1. <u>그 밖에 지역개발행정에 관한 사항</u></p> <p>제18조 (민방위재난관리과) <u>민방위재난관리과</u> 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재난(인위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u> <u>계획수립·집행</u></p> <p>10. <u>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u> <u>운영</u></p>